

#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

성별 남성

(나이) 32세

직종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

직업관련성 낮음

## 1.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8년 3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조립 및 조립세정 업무 를 수행하였다. 2012년 5월 건강검진에서 범혈구감소가 발견되어 2012년 5월 16일 대 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하고 타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32세가 되던 2012년 6월 7 일 골수형성이상증후구(D46.9)으로 진단받았다. 이후 항암치료 하였으며 2014년 8 월 타인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추적관찰 중이다. ○○○은 □사업장에 는 조립과와 가공과가 같이 있었는데, 가공과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, 조 립과에 있는 세정기에는 톨루엔과 자일렌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상병발생 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였다.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#### 2. 작업화경

근로자는 □사업장 근무 전인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년 11개월 동안 △사업장에 서 형광등 안전기 및 소켓 전선조립 작업을 하였다. 환기 시설은 창문과 환풍기가 주 를 이루며, 모든 공정이 카막이 없이 공유하는 형태로 용접휶과 분체 분진 등으로 공 장내부가 뿌연 적이 많았다고 하였다.

근로자는 2008년 3월부터 □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, 엔진조립작업을 2년6개월, 2011년 1월부터 조립 세척 업무를 1년 6개월간 수행하였다. 주야간 2교대 작업으로 1 주마다 교대하였다. 주간반은 08:30-17:30. 야간반의 경우 19:30-04:00 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.

엔진조립작업당시 근로자가 직접 엔진 착화테스트 작업을 하지 않았다. 공정에서 발 생되는 매연 등의 배출을 위해 테스트기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가동 중에 있었으 며 작업장의 전체 환기를 위한 다수의 배기 팬을 활용 중에 있으나 일부 배기 장치의 경우 최종 배출구가 작업장 내 위치되어 있어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유해가스가 작업 장 내 재확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옆 공정에 배치되었던 근로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마스크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면장갑만을 착용하였다.

I. 암질환 가. 림프조혈기계암 18 19

조립세정 작업은 가공에서 넘어온 실린더 블록을 세정기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이었다. 세정기는 개폐방식으로 문이 열릴때마다 세정유 수증기를 흡입하고, 피부에 노출되었다

# 3.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### 4.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# 5.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8년 3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조립 및 조립세정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2년 5월 건강검진에서 범혈구감소가 발견되어 2012년 5월 16일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하고 타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32세가 되던 2012년 6월 7일 골수형성이상증후군(D46.9)으로 진단받았다. 내원 당시 혈색소(hemoglobin) 10.0 g/dL, hematocrit 29.3%, 백혈구수(WBC count) 2.4 \* 103/uL, 혈소판(platelet) 47 \* 103 / uL 로 범혈구감소 소견 보였다. 이후 항암치료 하였으며 2014년 8월 타인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추적관찰 중이다. ○○○은 부모와 형제에서 혈액 질환이나 암 관련 가족력은 없었으며, 음주는 최대 주2회 소주 2병을 마셨고, 과거흡연자로 10년간 하루 반 갑(5PY) 흡연하였다. 의무기록에서 B 형 간염과 C 형 간염 모두 음성이었다. 과거건강보험수진기록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다. 다만, 2011년 건강검진에서도 혈색소 11g/dL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.

## 6.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32세가 되던 2012년 6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 받았다. ○○○은 2008년 3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엔진부에서 조립과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,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, 디클로로메탄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○○○은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, 벤젠은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한다. 디클로로메탄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. 끝.